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8. ~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6호의13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병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의 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재심의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재심의 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주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이의 신청일 | | |
| 처 분 내 용 | | |
| 이의신청 내용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액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input type="checkbox"/> 처분 취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 |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 |

귀하의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뒤쪽)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 | | | |
|---------------|--------------|------------------|-----------|
|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이의신청 의견 | 처분결과 및 사유 | |
| | 결 정 | (수용, 기각) | |
| 심사결정 | 사 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 | | | | |
|---------------|--------------|-----------------|------------------|--|
| 이의신청 어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 | 이의신청 의견 | | | |
| 심사결정 | 결 정 | (수용, 기각) | | |
| | 사 유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 | | | |
|---------------------|----------|--------------------|-----------|
| 이의신청 공동농업 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명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 |
| 이의신청 내 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 이의신청 의견 | | |
| 심사결정 | 결 정 | (수용, 기각) | |
| | 사 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 | |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 제 | 호 |
| 결정일자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 |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 |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결정 주문 | []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 []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 |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 | | |
| 결정 이유 | | | |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00지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 |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복무기관 | 복무분야 |
| | 주소 | |
| 심사결과 등 | 심사 결과 |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장 직인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유의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 문 :

원처분 요지 :

이의신청취지 :

결 정 이 유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알 림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유의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주문 | | |
| 결정 요지 | | |
| 이의신청 취지 | | |
| 결정 이유 | | |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귀하가 20 신청한 부과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 고 등 검 찰 청

수 신 ○ ○ ○ 귀하

(대리인)

주소

제 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

피의자(피내사자) ○○○에 대한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
| 결 정 | 사 건 번 호 | |
| | 년 월 일 | . . . |
| | 주 문 |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취소를 명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비 고 :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20 . .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 |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 청구인 | 성명 | | |
| | 소속 / 직급(호봉) | | |
| | 주소 | | |
| | 이의신청 사유 | | |
| 결정주문 | | 결정내용 | |

귀하의 이의신청이 위와 같이 인정[]·부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3)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국 방 부 장관 직인